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및 「항공안전법」(법률 제20396호, '24.3.19.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공역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역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역등급” 정의에 공역등급을 7개 등급(A~G등급)으로 구분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3호)
- 나. “항공교통업무”의 정의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9의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1권의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 정의에 맞게 본 규정 상 ‘중요지점’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0호)
- 다. 특수사용공역의 종류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신설하고(안 제18조제4항제8호), 명칭 부여 기준을 명시함(안 제18조제5항제2호)
- 라. 비행금지·비행제한·위험구역에 국가코드인 ‘RK’를 부여하고, 인근 마을, 도시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공역 ‘이름’을 부여토록 규정함(안 제18조제5항제1호)
- 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에 사용된 용어와 일치토록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관제업무’로 수정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공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39호 공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 FIR; 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를 “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역등급”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제9의2 및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10.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 또는 비행경로의 설정,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제2조제13호의 “항공교통업무(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및 경보업무를 포함한다)”를 “항공교통업무”로 한다.

제3조의 “인천 비행정보구역(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를 “인천 FIR”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FIR내”를 “인천 FIR 내”로 하고, “다만, 3월 미만의 일시적 공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부 공역에 대한 공역을 지정”을 “일부 공역을 주의공역으로 지정”으로 하고, “다만, 3개월 미만의 일시적 공역에 관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누년”을 “누년(이전 연도 누적)”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UA

제18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가. ICAO에서 지정한 국가 영문약칭 “RK”,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
(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RK P73A)

나.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른 이름을 부여
(예: NAKDONG)

제18조제5항제2호 중 “제4항제5호 내지 제7호”를 “제4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항공교통업무”를 각각 “항공교통

관제업무”로 한다.

제3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주의공역의 경계구역란 다음에 주의공역의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u>인천 비행정보구역(인천 FIR: 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u>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u>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공역등급”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u>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각 등급별로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이 정해져 있다.</u> 4. ~ 9. (생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u> 4. ~ 9. (현행과 같음) <u>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u>

	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10.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u>항공로를 설정하거나, 다른 항행 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u>	10. ----- ---- <u>항공로 또는 비행경로의 설정,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 업무</u> -----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항공교통업무기관(ATS authority)"이란 <u>관련공역 내 항공교통업무(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및 경보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u>	13. ----- ----- <u>항공교통업무를</u> ----- ----- ----- ---
14. ~ 16.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u>인천 비행정보구역(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u> 내의 공역관리와 운영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 또는 공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특례)에 의거	제3조(적용범위) ----- <u>인천 FIR</u> ----- ----- ----- ----- ----- ----- -----

대한민국 군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통제구역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FIR내의 일부 공역에 대한 항공기 등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월 미만의 일시적 공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주의구역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를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 FIR내의 일부 공역에 대한 공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일시적 공역에 관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략)

-----.

제10조(통제구역지정) ① -----

인천 FIR 내-----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의구역지정) ① -----

---- 일부 공역을 주의구역으로 지정-----.<삭제>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17조(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
위원회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
정된 의안은 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의안번호는 영문약칭 2자
리, 개최연도 2자리, 회의차수,
누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2. 위원회의 영문약칭은 AC
로, 실무위원회의 영문약칭은
WC로 한다.(예: AC04-07-010,
WC04-13-080)

④ ~ ⑦ (생 략)

제18조(공역 등의 명칭부여 및 표
기) ① ~ ③ (생 략)

④ 특수사용공역의 종류를 나타
내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신 설>

⑤ 특수사용공역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
위원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누년(이전 연도 누적) -----
-----.

2.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역 등의 명칭부여 및 표
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UA

⑤ -----
-----.

1.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ICAO에서 지정한 국가 영문약칭 "RK",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RK P73A) 2. 제4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C ATA 7L, MOA 2H) ⑥ ~ ⑧ (생략) 제20조(공역등급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공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지정한다. 1. ~ 2. (생략) 3. C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u>항공교통업무를</u>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1. 제4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가. ICAO에서 지정한 국가 영문약칭 "RK",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RK P73A) 나.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른 이름을 부여(예: NAKDON G) 2. 제4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역등급 구분)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항공교통관제업무</u>----- ----- ----- -----
---	---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의 분리 업무와 다른 시계비행 항공기 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 록 지정·공고한 구역	----- ----- ----- -----
4. D등급구역은 모든 항공기에 <u>항공교통업무를</u> 제공하며, 계기 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계기 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와 시계비행항공기에 대한 교통정 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 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구역	4. ----- <u>항공교통관제업무</u> ----- ----- ----- ----- ----- ----- -----
5. E등급구역은 계기비행항공기 에게는 <u>항공교통업무와</u>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의 분리 업무를 제공하고, 상황이 허용 되는 범위에서 모든 항공기에 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 정·공고한 구역	5. ----- ----- <u>항공교통관제업무</u> ----- ----- ----- ----- -----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 」에 따라 <u>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u> <u>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u>	제39조(재검토기한)----- ----- <u>이 고시에 대하여 「훈</u> <u>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u> <u>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u> <u>1일</u> -----

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